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지원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0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4.
3. 회부연월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과거에는 디지털 기기가 교육의 단순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AI 기반 학습플랫폼, 디지털 문제은행, 맞춤형 학습 콘텐츠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수업 과정에 실질적인 교수·학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이용 여부가 학생의 학습 참여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OECD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결합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¹⁾

- 그러나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은 일반 학생에 비해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거나 관련 교육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의 격차로

1) OECD,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ies on students' learning」,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2025. 9. 25.

2) 초·중학생이 주로 활용하는 엘리하이, 밀크T 등 주요 디지털 학습서비스 이용료는 약정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2개월 약정에 대략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원형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는 사례가 많으며, 현행 법령에서도 국가 등의 재정 지원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 교육비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지원대상에 있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³⁾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⁴⁾

- 다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 교육정보화 지원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授業料)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4) 현재(2026년 기준)는 해당 규정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PC(185억 6,000만원), 인터넷 통신비(343억 3,300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개정안과 현행법령의 지원대상 비교]

개 정 안	현행 법령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⁵⁾에 따른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2026년 일몰예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290억원),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63억원),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60억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AI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⁶⁾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별예)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6) <참고자료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

□ 현황

- 지방비(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지원
 - * 시도별로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20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화 지원 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26.7월 기준, 출처:시도수합)

시도	PC(노트북 등)	통신비	비고
서울	0	2,693	서울시 사랑애포사업 중복, '20년이후 전학년 스마트기기 보급 추진
부산	2,965	3,034	
대구	1,829	1,645	
인천	0	3,234	전학년 1인1스마트기기 지원 대체
광주	374	1,815	
대전	503	1,228	
울산	398	762	
세종	352	139	
경기	3,780	5,833	
강원	1,800	1,455	
충북	882	1,140	
충남	1,104	1,178	
전북	1,807	1,872	
전남	519	1,571	
경북	1,120	2,888	
경남	0	3,218	PC지원은 「아이북 사업」으로 대체
제주	1,127	628	
합계	18,560	34,333	

자료 : 교육부

참고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추진 내용

< 2026년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3차 편성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사업 내용
디지털 교육혁신		614,347.6	(100%)
①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454,347.6	(74%)
① AI·디지털 활용 수업학교 지원	79,950	AI·디지털 활용 수업학교 지원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운영 등	
② AI·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AI 중점학교 운영	59,721	AI중점학교 운영 지원 AI· 체험 교육 환경 조성 등	
③ AI·디지털 교육 환경(인프라) 조성	123,297	디지털 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 및 테크센터 운영 등	
④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29,000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한국어교육 시스템 기능 개선 등	
⑤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6,28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특수교육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⑥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6,000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⑦ 디지털 대응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13,420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⑧ AI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지원	26,264.6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AI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	
⑨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	34,280	선도교사 및 전체 교사 연수 기반 구축 및 지원	
⑩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46,057	17개 시·도교육청 연수 시행 및 지원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집행)	
⑪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17,876	학교 컨설팅 연수 지원	
⑫ 수학·과학 분야 AI인재 양성 지원	2,200	이공계 학생 성장, AI 활용 수학 성장 수업 모델 개발·보급 등	
⑬ 취약계층 학생 대상 AI 활용 지원	10,000	취약계층 학생 대상 AI 활용 지원	
②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지원		160,000	(26%)
① 디지털 새싹(AI기반 학습관리 및 AI·디지털 교육 지원)	108,500	방과후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지원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1,500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지원	